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변경(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u>지방검찰청·지청</u>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 ----- <u>지방공소청·지청</u> -----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